



#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6월 28일부터 달라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공포(13.1.8)에 따라 2013년 6월 28일부터 소비자가 음식점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표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원 등)와 합동으로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건의내용 등을 반영·개선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처 : 농림수산물식품부 보도자료

**01**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글자크기도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한다.

**메뉴판**

돼지갈비	8,000원(국내산)
심계탕	8,000원(대머리산)
심계탕	8,000원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식재료를 닭은 국내산과 중국산  
▶ 쌀은 국내산만을 이용한다.

**기준**

글자 크기 : 음식명 글자의 1/2  
표시 위치 : 규정 없음

**메뉴판**

돼지갈비	8,000원(국내산)
심계탕	8,000원(대머리산)
심계탕	8,000원(국내산)
심계탕	5,000원(중국산)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쌀은 '국내산'만을 이용한다.

**개정**

글자 크기 : 음식명 글자 크기 이상  
표시 위치 : 음식명 바로 옆 또는 하단

**02**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줄였다. 배추김치의 경우,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예시 1)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예시 2) 닭갈비(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국내산 닭 섞음 비율이 중국산 보다 낮다(적게 들어감)는 뜻

품명	원산지	품명	원산지
양돈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국내산
산계집	덴마크산	산계집	덴마크산
쇠고기	국내산 한우	쇠고기	국내산 한우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쌀	국내산(이월쌀)	쌀	국내산(이월쌀)
갈치	국내산	갈치	국내산

**기준**  
축산물만 표시

**개정**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 농수산물

**03**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인열하는 재료의 경우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하였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 ◆ 16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 ◆ 기존품목 표시 확대(강화) :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